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6. 02. 25.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 2. 제안이유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 대출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 (기존) 전월세 보증금 → (변경) 주거자금
- 지원범위 확대
  - (기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확대) 주택 매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확대

- (기존)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 (확대)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 제도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자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제명을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에서 “평창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1조, 안 제 2조, 안 제 3조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을 “주거자금” 으로 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에서 “거주자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로 개정하며 가목과 나목을 신설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와 주택 매입 대출이자의 경우로 기준을 나누어 정하였고, “임대차계약 서상 주소” 를 “임대차계약서상 또는 매매계약서상 주소” 로, “임대주택” 을 “주택” 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 을 “매입자금·전세 자금 대출사업 또는” 으로, “임대차” 를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로 개정하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지원금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로 개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중심의 조례를 주택 매입 대출이자까지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청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개정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